독일의 다국적 허용과 관련된 근거법률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팀

Ⅰ. 독일의 다국적 허용의 근거법률

독일에서 다국적 소지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적법(StAG: Staatsangehörigkeitsgesetz)' 으로서, 2000년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국적취득제도의 틀을 만들었으며, 최근의 소규모 개정은 2008년 12월 17일과 2009년 2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2009년 2월 5일의 개정사항은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의 국적법은 독일인을 독일국적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동법 제1조),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4조), 시민권 획득을 통한 외국인의 독일국적취득(이하 '귀화'라 통칭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8조-제16조, 40b조, 40c조)을 중심으로 독일 국적 취득요건 및 다국적 소지 허용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출생에 의한 독일 국적 취득 및 다국적 소지의 가능성 여부

1. 최소한 한쪽 부모가 독일 국적을 지닌 경우

(1) 혈통주의(Abstammungsprinzip) - 속인주의

적어도 한 쪽 부모가 독일 국적이면 출생을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동법 제4조 1항). 이를 이른바 혈통주의(Abstammungsprinzip)라고 한다. 독일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다.

(2) 다국적 소지의 원칙적 허용

부모 중 한 쪽만이 독일 국적자인 경우, 출생한 자녀는 독일 국적 외에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다국적(Mehrstaatigkeit) 소지자가 될 수 있다. 독일 국적법은 다음에서 살펴볼 경우에서처럼 양 부모 모두가 독일 국적자가 아닌 경우, 그 자녀의 독일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소지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

는 반면(동법 제29조), 양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국적자인 경우에는 다국적 소지 제한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어, 독일 아닌 다른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 다국적 소지자가 될 수 있다.[1)]

이 경우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른바 옵션모델(Optionsmodell)에 해당하지 않아 성년이 되더라도 한 쪽 국적을 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독일 국적자가 되며 다른 국적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양쪽 부모 모두가 독일 국적자가 아닌 경우

(1) 출생권(Geburtrecht)

독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혈통주의(Abstammungsprinzip), 즉 속인주의를 보충하는 출생권(Geburtrecht)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출생지(Geburtsort)도 국적 취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는 속지주의를 보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쪽 부모 모두가 독일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출생을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동법 제4조 3항). 이 때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양 부모 중 적어도 한쪽 부모가 8년 이상 독일에 적법한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무기한 체류허가(eine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이른바 영주권)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옵션모델(Optionsmodell): 다국적 소지 비허용 원칙 및 예외적 다국적 소지 허용

이와 같이 부모 양측이 모두 독일인이 아닌 경우,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외국 국적도 지니고 있는 아이는 성년이 되면 독일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밝혀야 한다(동법 제29조 1항). 이를 옵션모델(Optionsmodell)이라 하는데, 혈통주의(Abstammungsprinzip)에 근거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독일 국적이 상실되며, 23세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독일 국적은 상실된다(동법 제29조 2항). 독일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더 이상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역시 23세까지 입증하지 않을 경우 독일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동법 제29조 3항).

하지만 독일 국적법은 이러한 다국적 소지 비허용 원칙의 예외적 사유로서 다국적 소지를 허

1) 일례로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했던 한 축구선수는 무려 3개의 국적을 지니고 있다. 이 축구선수는 아버지가 독일인, 어머니가 파나마 인이었고, 태어난 장소가 국적과 관련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브라질이어서, 독일, 파나마, 브라질의 3개 국적을 지니고 있다. 양쪽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일인인 경우에는 이처럼 3개의 국적을 지닐 수도 있다.

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인할 수 없는 경우(nicht zumutbar), 또는 귀화시에 예외적으로 다국적 소지를 허용하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한 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이다(동법 제29조 4항). 이때에는 21세까지 관할 관청에 독일 국적 유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 거부될 때에 비로소 독일 국적을 잃게 된다(제29조 3항).

(3) 과도기적 조항

독일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권에 따른 독일 국적 취득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외국인 자녀를 위한 과도기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에 아직 10세가 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생권을 가진 아이와 동일한 전제조건 하에서 – 즉 독일에서 태어나고, 적어도 본인의 한쪽 부모가 이미 8년 이상 독일에 적법한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무기한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귀화 신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b).

이러한 경우에 의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위에서 살펴본 옵션모델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다국적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Ⅲ. 귀화를 통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과 다국적 소지의 가능성 여부

1. 귀화의 조건

시민권 획득을 통한 외국인의 독일국적 취득, 즉 귀화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귀화신청과 둘째로는 독일 국적자와의 혼인에 의한 귀화신청이다.

(1) 독일 국적자와의 혼인에 의한 귀화신청조건

독일 국적자와의 혼인에 의한 귀화의 조건은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귀화신청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우선 귀화신청자는 신청 당시 독일인과 혼인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체류허가법(Aufenthaltsgesetz) 제80조의 기준에 근거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또는 법률상 대리권자가 있는 자이어야 함(국적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범죄로 인해 형벌을 부과받은 적이 없고 채무변제무능력으로 인한 법률상의 조치들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 독일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거주지가 있어야 함(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자기 자신 및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함(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 조건은 물론 파트너의 부양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이러한 기본적 조건 외에도 지금까지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동법 제12조에 기초한 다국적 소지 허용의 대상이 됨을 입증해야 하며(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독일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증하여야 하는데(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령 일상적인 독일어 구사를 통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혼인에 의한 귀화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국적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동법 제12조의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국적 소지자가 될 수도 있다. 제12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2)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귀화신청 조건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귀화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 당시 8년 이상 독일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체류허가법(Aufenthaltsgesetz) 제80조의 규정에 기초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법률상 대리권자가 있는 자이어야 함(국적법 제10조 제1항).
-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신청 당시에 무기한 체류허가를 지니고 있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독일 사회법전에 기초한 사회부조금의 신청 없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지금까지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범죄로 인해 형벌을 부과받은 적이 없고 채무변제무능력으로 인한 법률상의 조치들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독일의 법률 및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 및 독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자녀들은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과 함께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에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자녀들은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지 않은 자여도 상관이 없다(동법 제10조 제2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귀화신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다국적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국적 소지자가 될 수도 있다.

2. 귀화에 따른 독일국적 취득시에 예외적으로 다국적 소지자가 되는 경우

귀화에 따른 독일국적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

로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국적법 제12조는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이전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거나 특별히 과중한 조건하에서만 국적의 포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보다 상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법률이 귀화신청자의 국적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외국의 해당 관청이 귀화신청자의 국적포기를 규칙적으로 거절한 경우(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외국의 해당 관청이 귀화신청자의 국적 포기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없는 사유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나, 귀화신청자의 국적 포기를 수인불가능한 조건과 결부시키는 경우, 또는 완전하게 형식에 맞는 국적포기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동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성년자의 귀화가 다국적 소지 상태의 장애사유와 모순이 되고,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며, 귀화를 거절하는 것이 신청자를 특별한 어려움에 빠뜨릴 지도 모르는 경우(동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귀화신청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중대한 불이익,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중대한 경우(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귀화신청자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51년 7월 28일의 국제협약 제28조에 따른 증명서를 지니고 있는 경우(동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독일 국적법상의 원칙은 다국적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귀화에 의한 독일국적 취득자들의 상당수가 다국적 소지자이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귀화를 통한 독일국적 취득자의 숫자와 이 중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다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2)]

해당년도	귀화를 통한 독일국적 취득자 숫자	다국적 소지자 숫자 및 비율
2000년	186,688 명	83,856 명 / 44.9%
2001년	178,098 명	85,995 명 / 48.3%
2002년	154,547 명	64,117 명 / 41.5%
2003년	140,731 명	57,285 명 / 40.7%
2004년	127,153 명	55,331 명 / 43.5%
2005년	117,241 명	55,319 명 / 47.2%
2006년	124,566 명	63,568 명 / 51.0%
2007년	113,030 명	59,241 명 / 52.4%

Ⅳ. 요 약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독일 국적법에 의해 다국적 소지가 가능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쪽 부모가 모두 독일 국적자이고, 국적과 관련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외국(예: 미국, 브라질 등)에서 태어난 자는 독일 국적과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다른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부모 중 한 쪽이 독일 국적자이고, 다른 한 쪽의 부모 국적을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독일 국적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태어난 장소가 국적과 관련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외국인 경우에는 출생을 통해 그 나라의 국적까지 총 3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른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양쪽 부모 모두 독일 국적자가 아니지만, 독일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부모의 국적과 독일 국적을 함께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23세 이전에 다른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국적 소지가 가능하다.

넷째, 시민권 획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국적 소지가 가능하다.

주 현 경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2) 출처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bamf.de/cln_092/nn_442016/SharedDocs/Anlagen/DE/Migration/Publikationen/Forschung/WorkingPapers/wp17-einbuergerung,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wp17-einbuergerung.pdf.